

[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]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2. 10. 11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6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25.

라. 의안번호 : 제 2002 - 36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 (안 제1조)
-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함. (안 제3조)
-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·도의 보조금, 양여금 및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함. (안 제4조)
-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,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 토지 등의 매수, 조사·연구지원,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, 산업단지 등 폐수 재이용의 지원, 주민지원사업,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, 환경기초시설의설치·운영지원 (안 제5조)

- 금고설치 : 거창군 관내 금융기관에 설치 (안 제6조)
-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환경과장, 자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 주사로 함 (안 제7조)
-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 (안 제10조)
- 매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.군에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낙동강 수계 자금의 관리·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종류와 세출 항목의 설정, 금고의 설치,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규정, 자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.군에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낙동강 수계

자금의 관리·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종류와 세출항목의 설정, 금고의 설치,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규정, 자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의 기준을 설정한 조례로서 그 체제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